

2026

소방공무원 공채/경채
소방관계법규 핵심
기출문제 지문 중심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- ◆ PDF 전자책
- ◆ 소방 공무원, 자격증 기출 지문 정리
- ◆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◆ 2시간 19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소방관계법규 핵심

ISBN : 979-11-7393-176-5

발간일 : 2026-01-28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7,000원



소방관계법규 핵심

[목차]

제1편 소방기본법(p3)

제2편 화재조사법(p24)

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(p28)

제4편 화재예방법(p50)

제5편 소방시설법(p72)

제6편 위험물관리법(p105~132)

[비고]

하늘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 빈출(2~3회 이상) 지문

붉은색은 5회 이상 빈출 지문(암기 필수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소방기본법

[목차]

제1장 총칙

제2장 소방장비 등

제3장 소방활동 등

제4장 소방산업의 육성 등

제5장 한국소방안전원

제6장 보칙

제7장 벌칙

[약어]
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청장은 소방청장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소방관서는 소방청, 소방본부, 소방서
- 관서장은 소방관서장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)
- 대원은 소방대원
- 소방차는 소방자동차
- 안전원은 한국소방안전원
- 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
- 대상물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물
- 위급상황은 화재, 재난/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제1장 총칙

1. 목적

- (풍수해가 아니라) 화재 예방/경계, 진압
- 위급상황시 구조/구급
-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- 공공 안녕, 질서 유지, 복리증진

2. 정의

가. 소방대상물

- 건축물, 차량
- 항구에 매어둔 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
- 산림, 인공구조물, 물건
- 단, 항해중인 선박 제외

나. 관계지역

-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 지역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, 구조/구급 필요

다. 관계인

- 대상물 **소유자**, **관리자**, **점유자**

라. 소방본부장(이하 본부장)

- 시도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, 구조/구급 담당 부서 장

마. 소방대

- 화재 진압, 위급상황시 구조/구급
- 소방**공무원**, 의무**소방원**, 의용**소방대원**

바. 소방대장(이하 대장)

- 본부장, 소방서장(이하 서장) 등 위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

3. 소방기관의 설치 등

가) 시도 소방기관

- 대통령령으로 정함

나) 본부장/서장은 시도지사가 지휘/감독

다)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 둠

- 소방업무는
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
- 소방안전교육/홍보
- 위급상황 구조/구급

4. 119종합상황실(이하 상황실)

- 설치/운영 기준은 부령

가. 설치

1) 관서장

a) 정보 수집/분석, 판단/전파, 상황관리, 현장 지휘, 조정/통제

b) 소방청, 시도 본부, 소방서에 각각 설치/운영

c) ('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'이 아니라) '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'에 의한 전산/통신요원 배치, 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구비

2) 소방본부(이하 본부) 상황실에 경찰 둘 수 있다

3) 설치/운영은 (대통령령이 아니라) 부령

나. 실장

- 출동지령, 지원요청

- 현장지휘, 피해파악

- 수습 정보수집/제공 등

다. 상황 보고 (대상)

- 다음 **화재**시 등 소방서는 **본부**, 본부는 소방청 상황실에 **지체없이** 서면, 팩스,

컴퓨터통신 등 **보고**

1) **사망 5**, 사상 10, **이재민 100인 이상**

2) **재산피해 50억 이상**

3) 11층 이상, 15,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, 화재예방강화지구

4)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, 요양소

5) 항구에 매어둔 1천톤 이상 선박

5. 소방기술민원센터

가) **청장**/본부장이 (소방서가 아니라) 소방청/본부에 각각 설치/운영

- 센터장 포함 18명내

나) 업무

- **민원 처리**

- **법령해석**

- 질의회신집/해설서 발간

- 현장확인

- 청장/본부장 지시 업무 등

다) (센터장이 아니라) 청장/본부장은 공무원/직원 파견 요청

6.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

- 소방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,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**청장은 소방박물관**,

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설립/운영 가능

- **소방박물관은 부령, 소방체험관은 조례**

7.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종합계획)

가. 종합계획

- 1) **청장**은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수립/시행, 재원 확보 노력 의무
 -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 10월31일까지 수립

2) 내용

- 업무 체계 구축, 기술 연구/개발
- 장비 구비
- **전문인력 양성**
- 이동 어려운 자 대상 조치 등

나. (시군구가 아니라) **시도지사는** 매년 세부계획을 12월31일까지 수립해 청장에 제출

8. 소방의 날: 11월 9일

제2장 소방장비 등

1. 소방력

- **인력/장비**
- **기준은 부령**
- **시도지사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 확충 계획 수립/시행 요**
- **소방장비 분류, 표준화, 관리는 따로 법률로 정함**

2. 국고보조

가.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업무 경비 일부 보조

- 보조 대상사업 범위는 대통령령
- 기준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 따름

1) 다음 구입/설치

- 소방차
- 소방헬리콥터, 소방정
- 소방전용통신설비, 전산설비
- 방화복 등 장비
- 단, 전기/기계설비, 소방용수시설, 사무용집기 제외

2) 소방관서용 청사 건축

나.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와 설비 종류/규격(부령)

- 배연차중형 170마력 이상
- 특수 구급차 90마력 이상
- 구조정 30톤급
- 소방헬리콥터 5~17인승

3. 소방용수시설

- 소화전, 급수탑, 저수조

가. 시도지사

- 설치, 유지, 관리
- 화재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가능

나. 일반수도사업자

- 서장과 협의 후 소화전 설치
- 서장에 설치 통지, 소화전 유지/관리

다. 설치기준

1) 소방용수표지

- (청장이 아니라) 시도지사가 설치

a) 지하 소화전/저수조

- 맨홀 뚜껑 지름 648mm 이상
- 예외) 승하강식 소화전
- 맨홀 뚜껑 부근에 폭 15cm 노란색 반사도료 선

b) 지상 소화전, 저수조, 급수탑

- 안쪽 문자는 흰색,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, 안쪽 바탕은 붉은색,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 반사재료

2) 소방용수시설

a) 대상물과 수평거리: 주거/상업/공업 지역은 100m 이하

b) 소화전

- 상수도와 연결
- 지하식이나 지상식
- 소방호스 연결금속구 구경 65mm(65mm 이상 아님)